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나658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 항소인 A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21.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0. 12. 선고 2022가단1006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2. 23. 접수 제245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된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구년, 판사 정수미, 판사 강 웅